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선교 · 김위상
고동진 · 정동만 · 박정하
박충권 · 박성훈 · 김정재
이인선 · 김용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등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 중 “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
2.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제30조제3항제1호 중 “취사행위 또는”을 “취사행위,”로, “행위를”을 “행위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<u>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</u>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. 1. <u>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</u> 2. <u>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</u>
제30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<u>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</u> 를 한 자 2. ~ 4. (생략)	제30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취사행위,</u> ----- ----- <u>행위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